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9
----------	-----

제출일자 : 2009. 3. 9.

제 출 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심사경위

- 제출일시 및 제출자 : 2009. 2. 27. (남양주시장)
- 회부일자 : 2009. 3. 2.
- 상정일자 : 2009. 3. 9.(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의결일자 : 2009. 3. 9.(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도시국장 이광복)

가. 제안이유

-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2,627	-	102,627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90,021	90,021	
녹지지역	자연 녹지 지역	102,627	감)90,021	12,60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가	퇴계원리 152-6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90,021	200% 이하	도제원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용지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추성운)

- ① 당초 계획에 제외되었던 도시계획 시설인 경관녹지 2,549㎡가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면적을 단지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② 2008년 11월26일, 제162회 제2차 정례회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4. 심사 중 논의된 의견

- 당초 계획에 제외되었던 도시계획 시설인 경관녹지 2,549㎡가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면적을 단지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2008년 11월26일, 제162회 제2차 정례회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 왕숙천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심사결과 : 의견 제시

붙 임 : 의견서 1부. 끝.

의견서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음

1. 당초 계획에 제외되었던 도시계획 시설인 경관녹지 2,549m²가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면적을 단지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2008년 11월26일, 제162회 제2차 정례회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3. 왕숙천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